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14
----------	-----------

제안일자 : 2023. 02. 27.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3조 중 “개인에게”를 “개인 등에게”로 수정하여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을 포함시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3조 중 “개인에게”를 “개인 등에게”로 수정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개인에게”를 “개인 등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u>제13조(표창)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에 기 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 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제13조(표창) ----- ----- ----- -----<u>개인 등에게</u>----- ----- -----.</p>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 제11조 (생략)

<신설>

을 할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3조(표창)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